

[붙임 1]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표 (2025년 기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간 연장 가능
- 장기요양등급이 월 중 변경될 경우 상위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별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	15%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3. 방문요양 이용 요금

(단위: 원)				
방문당	급여 비용	본인 부담 15%	본인 부담 9%	본인 부담 6%
30분	16,940	2,541	1,525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5
90분	33,120	4,968	2,981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30
150분	49,160	7,374	4,424	2,950
180분	55,350	8,303	4,982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 심야 가산: 22:00~익 일 06:00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 가산
- 유급휴일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함

4.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 가능 일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일 가능 시간	최대 4시간	최대 4시간	최대 3시간	최대 3시간	최소 2 최대 3시간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34일	31일	27일	25일	21일